

교통지도과

불법주정차특별단속

직책	성명	전화번호
교통지도과장	정법권	2171-2010
교통지도팀장	정남용	2171-2011
담당자	박은숙	6361-3652

사업목적

- 도심 소통을 저해하는 주정차위반 차량 등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인력, 장비를 확충하여 단속업무를 강화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심지역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여 도시경쟁력 「Global Top5」 달성에 기여코자 함

사업개요

- 사업근거
 - 도로교통법제32 ~ 36조, 도로교통법시행령제12조, 제88조
 - 「기초질서지키기 선진화」를 위한 불법주·정차 단속지침('10. 2.10)
 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,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14조
- 단속인력 : 715명(시간제계약직 425명, 교통서포터즈 290명)
- 단속장비 : 단속차량 37대(CCTV 탑재차량 8대포함), PDA 261대
- 사업내용 : 주정차위반 및 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, 단속시스템 유지보수, 과태료 부과징수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

사업필요성

- 불법주·정차단속 추진을 위한 단속인력·장비 운영
 - 교통서포터즈 인건비, 단속원(시간제계약직) 피복비, 출장여비
 - 단속차량 유류비, 수리비, 보험료 등 차량유지비
 - 단속장비 교체·구입, 수리비
 - 단속원 사무실 운영을 위한 임대관리비, 공공요금 등
-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고지서 인쇄·발송
- 불법주정차위반 단속시스템, 차량탑재형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
- 불법주·정차 등 단속 추진을 위한 상시적 지속적 소요비용 확보

사업현황 및 추진계획

- 단속방향 : 교통안전과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시민생활편의 중심 계도 단속
 - 어린이보호구역, 자전거도로, 교차로, 횡단보도 등 취약지역 단속강화
 - 화물조업장소, 전통재래시장 등은 단속완화 (계도위주 관리)
 - 출·퇴근시간대 집중단속, 낮시간 및 공휴일 등은 계도위주 단속
- 단속방법 : 불법주·정차 단속조 편성 운영 (격일근무 1일 2교대)
 주요 간선도로 CCTV 설치 운영 (서울시 237대)
 CCTV탑재차량 상습 위반지역 단속 (8대, 105개구간)
- 과태료징수 : 전용차로통행위반 등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
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, 자치구 징수활동 강화 촉구

소요예산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2 예산(안)	2011 예산	증 감	산출내역
계	4,038	3,766	272	
기간제근로자등보수	1,954	1,952	2	◦ 교통서포터즈 290명 인건비 및 보험료
사무관리비	882	874	8	◦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료 ◦ 단속원 피복비, 단속용품 구입비 등
공공운영비	570	307	263	◦ 단속차량 유류비, 수리비, 보험료 및 공공요금 ◦ 불법주정차단속, CCTV탑재차량 시스템 유지보수 등
국내여비	507	471	36	◦ 단속원 출장여비
월액여비	-	54	△54	◦ 운수지도요원 상시출장여비
시책추진업무추진비	15	15	-	◦ 불법주정차특별단속 추진
공익근무요원보상금	3	3	-	◦ 공익근무요원 인건비
포상금	18	18	-	◦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체납 포상금
자산및물품취득비	89	72	17	◦ 단속차량5대, 단속장비(카메라30대, 프린터18대)

※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체납 번호판 영치인력 신규채용(18명)으로 인한 장비, 피복, 여비 등 소요비용 편성. 차량 유류비, 수리비 등 차량유지비 실소요액 및 PDA, CCTV 탑재차량 시스템 유지보수비 반영

기대효과

- 교통안전과 소통확보 범위내 시민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단속활동으로 시민생활 편의 증진 및 교통질서 확립

택시등위법행위단속

직책	성명	전화번호
교통지도과	정법권	2171-2010
운수지도팀장	전기성	2171-2012
담당자	김남현	2171-2032

사업목적

- 심야 택시승차거부 등 위법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점검과 명절, 연말연시, 나들이철 등 시기별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사업용자동차(택시, 버스 등)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함.

사업개요

- 추진기간 : 2012. 1. 1 ~ 12. 31
- 단속인원 : 65조 144명 (직원 23명, 시간제계약직 121명)
 - 운수지도팀 6개조 25명 (직원 23명, 시간제계약직 2명)
 - 6개 지역대 59개조 119명(시간제계약직)
- 단속장비 : 22대(단속차량 7, 카메라 11, 고정식CCTV 4)
- 단속내용 : 택시승차거부, 부당요금, 합승행위, 콜밴 부당요금 등
 - 중점단속 : 상습 승차거부지역 20개소

사업필요성

- 심야 단속인원 증원, 중점단속 지역의 확대 등을 통한 단속강화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택시승차거부 등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음.
- 심야단속용 소모품 및 특별단속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필요
- 명절, 연말연시 등 특별단속계획 추진시 공휴일(연휴기간)단속, 심야단속 (22:00 ~ 03:00) 실시에 따른 소요예산 필요

사업현황 및 추진계획

○ 중점단속계획

- 택시 승차거부, 불친절, 도중하차, 호객행위 및 장기정차여객유치 행위
 - 합승행위, 부당요금 징수 및 빈차로 운행시 택시표시등 끄는 행위
 - 귀로영업행위 및 예약표시등을 켜놓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등
- ※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효율적인 합동단속 강화

○ 명절, 연말연시, 사업용차량 환경실태 점검 등 특별단속 추진

소요예산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2 예산(안)	2011 예산	증 감	산출내역
계	74	-	74	
사무관리비	20	-	20	◦ 심야단속장비 소모품 구입, 인쇄 등 ◦ 명절, 연말연시 등 특별단속 추진
월액여비	54	-	54	◦ 운수지도 상시단속여비

※ 사업용자동차 단속 소모품비와 명절, 연말연시 등 특별단속 추진 소요비용 편성.

월액여비는 '서울특별시공무원여비조례시행규칙' 별표(상시출장공무원: 운수지도요원)에 의거 편성하였으며, '11년 불법주정차특별단속 사업에 편성되었던 것으로 증액아님.

기대효과

- 사업용자동차의 불법행위 근절로 여객운송질서 확립 및 교통흐름 개선